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02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재원·정춘생·신장식

김선민 · 황운하 · 박정현

김준형 • 신정훈 • 민병덕

염태영 · 송기헌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도록 하고 있음.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고 함)의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단체 회장 선출의 공정성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 ⑨ 회원종목단체는 제8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생	제33조(대한체육회) ① ~ ⑦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⑧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이
	하 이 조에서 "회원종목단체"
	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
	로 선출한다.
<u> <신 설></u>	⑨ 회원종목단체는 제8항에 따
	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
	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u>여야 한다.</u>
⑧ (생 략)	<u>⑩</u> (현행 제8항과 같음)